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내란·외환의 죄 관련 형사재판 정지 금지 등 〉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744호)

2025.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내란·외환의 죄에 관련 형사재판 정지 금지 등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추미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2. 1.

(3) 회 부 일 : 2025.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 형사재판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안정성에 즉각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 최근 일부 세력이 최근 형사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악용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내란 및 외환에 관한 범죄는 그 특성상 국가 위기 상황과 직결되며, 이러한 사안에서 재판정지 제도를 악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정질서 유지에 중대한 허점을 만드는 것임. 특히 위헌심판이 장기화될 경우 책임 규명과 법적 판단이 늦어져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게 됨.

이에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여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이와 관련된 위

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중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 헌정질서 보호, 절차 악용의
예방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Ⅲ. 검토의견

1. 내란·외환의 죄 관련 형사재판의 정지 금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 정지제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안 제42조제3항 신설),

이러한 형사재판에 관한 위헌 여부 심판이 제청된 경우 제청서 또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심판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u><신 설></u>	제47조의2(내란죄 및 외환죄에 관한 법률의 위헌심판 결정기간) ① 헌법재판소는 제42조제3항의 형사재판에

현행	개정안
	<u>관련된 위헌 여부 심판이 제청된 경우에는 제청서 또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심판을 종국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u> <u>②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생략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¹⁾ 제1항에서는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고,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 정지제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형사재판에 관련한 위헌 여부 심판이 제청된 경우에는 제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

1)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제1항·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월 이내에 그 심판을 중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란 및 외환죄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재판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법 정의와 사회 안정을 실현하고자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의 규정은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내린 다음 재판을 속개하도록 함으로써 위헌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 진행으로 형성된 법률 관계를 추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규정인바,

재판 정지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 관계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및 그 심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에 해당하므로 특정 법률, 특정 범죄, 특정 사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 제47조의2제2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사건 제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0조²⁾에 따른 경우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구두변론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47조의2제2항과 같이 변론 생략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법제적 보완사항으로 개정안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제42조제3항의 형사재판에 관련된 위헌 여부 심판이 제청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제청서 또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심판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경우는 “제청서”를 작성³⁾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므로 “청구서”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8

3) 「헌법재판소법」 제43조(제청서의 기재사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청법원의 표시
2.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